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11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2. 위 치 : 서구 연희동 707-2번지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	변 경(안)				
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
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34	3,294.0	2	821.4	2필지로 대지 분할(권장)	34	3,294.0	2	821.4	2필지로 대지 분할(권장)
		3	521.1				3-1	214.1	
							3-2	307.0	
		4-1	161.4	5-1번 획지와 공동개발(권장)			4-1	161.4	5-1번 획지와 공동개발(권장)
		4-2	273.1	도로39㎡			4-2	273.1	도로39㎡
		5-1	431.4	4-1번 획지와 공동개발(권장)			5-1	431.4	4-1번 획지와 공동개발(권장)
		5-2	277.8	도로3㎡			5-2	277.8	도로3㎡
		6	382.8				6	382.8	
		7-1	187.5				7-1	187.5	
		7-2	237.5				7-2	237.5	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34	3 → 3-1, 3-2	3획지(521.1㎡)를 3-1획지(214.1㎡)와 3-2획지(307.0㎡)로 획지분할	효율적인 토지이용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
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